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483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2일

발 의 자:최영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소영, 김춘례, 김태호, 김평남,

박기재, 안광석, 오한아, 이석주,

황규복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정관의 규정으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 조례로 명기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정보편의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상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2명, 이사회 추천 2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고, 집행부·의회 간 균형·견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그 구성을 시장 추천 3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,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9조를 제9조부터 제2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재단은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성에 따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
 - 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, 법인의 임직원,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,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	현 행	개 정 안
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, 법인의 임직원,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		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재단은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다음 각호의 구성에 따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2.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인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하며, 법인의 임직원, 서울시의 공무원및 시의회의원은 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.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, 추천된자가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회의를 주재한다. 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면지 시장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

회의 운영,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
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
로 정한다.
제9조 ~ 제20조(현행 제8조부터 제19
조까지와 같음)